

## <붙임>

### 보험상품심사 관련 법령

#### □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기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를 별표 1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변경 등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의 변경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신고(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제2호·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 여부와 예정위험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별표 1] : 기초서류의 작성기준(제9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관련)

## □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7-83조 내지 제7-8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감독원장은 제출된 보험상품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4-2]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제7-50조의2 관련)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86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8] :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